

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-60호

「특허법」 제61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, 「실용신안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「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(이하 ‘고시’라 합니다)」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2026년 초고속심사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3일
지식재산처장

2026년 창업지원 초고속심사 운영계획

신청대상 기술분야	신청대상 기술분야	신청건수 제한
연간 신청건수 제한	1.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출원 중 인공지능 및 첨단로봇 분야 * 단 첨단로봇의 경우, 인공지능 응용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, 이를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여야함	연간 2,000건
	2.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출원 중 바이오-생명공학, 헬스케어 분야	연간 2,000건
신청자격	아래 ①, ②,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(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)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③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	
신청방법	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2호서식의 ‘우선심사신청서’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- 고시 제6호서식의 ‘우선심사신청설명서(초고속심사)’ 1부 (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첨부) -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	
신청기간	2026. 2. 23. ~ 2026. 12. 31.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	
신청료	특허 20만원, 실용신안 10만원 (일반 우선심사와 동일)	

* 연간 신청건수는 초고속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